

---

# 기 관 이 용 안 내 서

---

굿모닝천안요양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②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③ 장기요양인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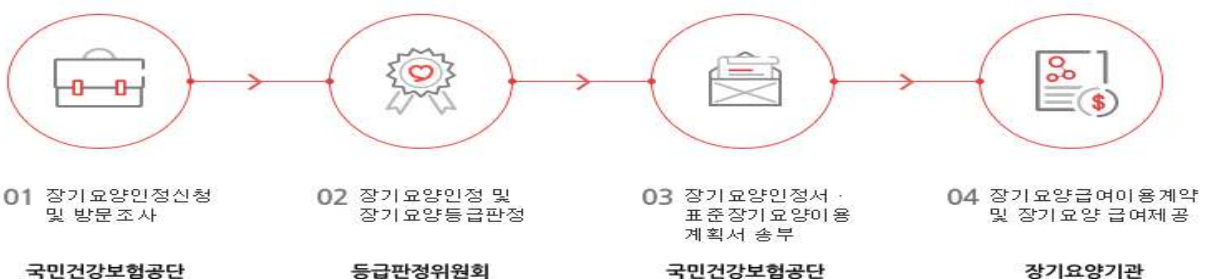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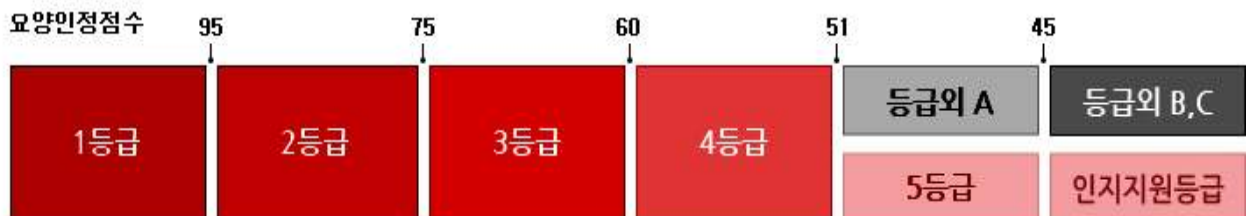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 23 명)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2.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1년간 연장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5은 자체규정을 정함으로 재계약 없이 확인 후 이용료 반영함

#### 3. 이용자 부담 이용료에 관한 사항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산정 한다.

④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

- ①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②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④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을 작성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의 권리

-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종사자 근무체계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인원	1	2	1	-	10	-	위탁 급식	-
계	총 : 14 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의거 직원배치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야간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시설급여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일당	71,900	66,710	61,520
본인부담금(20%)	431,400	400,260	369,120
본인부담금(12%)	258,840	240,156	221,472
본인부담금(8%)	172,560	160,104	147,648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30일 기준)

연 번	항목	서비스 내용	단가	월비용	비고
1	식재료비	1일 3식	2,800원 / 식	252,000원	30일 × 8,400원 / 일
2	간식비	1일 1회	500원 / 일	15,000원	30일 × 500원 / 일
3	이·미용비	월 1회 컷트	-	현재 무료	추후 유료로 전환 가능성도 있음

▶ 시설의 규모, 설비

시설 현황	침실	1인실	3인실	4인실	특별침실	요양 보호사실	사무실	상담실
	개소	1	2	4	1	1	1	1
	시설	식당	주방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면장)	세탁실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개소	1	1	3	1	1	1	1

▶ 화재 및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	2020.11.06. ~ 2021.11.06
화재보험	DB손해보험	2018.10.23. ~ 2021.10.23

▶ 최종 장기요양평가결과 / 기관 우수사례

### 2018년 평가 결과표

####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정기평가 B(우수)

급여종류 : 시설급여

○ 대분류 영역별 수준

대분류영역	기초등급	관료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개선	급여제공개선
별 개수	★★★★★	★★★★★	★★★★★	★★★★★	★★★★★
점수	78점	98점	100점	62점	94점

▶ 별개수 : 환산점수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5개(★★★★★) 부여, 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최대 5개(★★★★★) 부여, 40점 미만은 별개수는 표시하지 않고 환산점수만 표시

▶ 점수 :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배점비중)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소수점이하 표기하지 않음)

**굿모닝천안요양원**





## ▶ 급여성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①옷갈아입기도움②세면도움③구강청결도움④신체청결도움⑤머리감기도움⑥몸단장⑦식사도움⑧체위변경⑨일어나앉기⑩이동⑪화장실이용하기⑫시력⑬약복용⑭관절움직임
인지관리 정서지원	①인지기능②정서지원
건강관리	①투약관리지도②약복용 및 인슐린 주사③관절구축예방간호④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⑤건강교육 및 상담⑥감염간호⑦의사진료지원⑧치매간호⑨의료기관의뢰
간호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 산소요법관리)②욕창간호(예방, 피부, 상처간호)③경관영양(비위관교관관리, 영양간호)④통증간호⑤배설관리(도뇨관, 방광, 회음부, 요루간호)⑥배설간호(관장, 장루간호)⑦투석간호⑧당뇨발관리⑨구강간호
기능회복훈련	①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②신체기능훈련③기본동작훈련④일상생활 동작훈련⑤인지기능프로그램⑥여가, 정서프로그램⑦사회적응훈련⑧가족대상프로그램⑨물리치료⑩작업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②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③환경관리④물품관리⑤세탁물관리

## ▶ 일일 생활시간표

시간	내용
06:00 ~ 08:00	아침 기상, 침구 정리, 위생활동 (세안)
08:00 ~ 08:30	아침식사 및 약 복용
08:30 ~ 10:00	기저귀케어 및 간호서비스
10:00 ~ 10:30	기능회복훈련 및 간식 (개인간식 포함)
10:30 ~ 12:00	프로그램활동 및 간호서비스
12:00 ~ 13:00	점심식사 및 약 복용
13:00 ~ 13:40	휴식
13:40 ~ 14:40	기저귀케어 및 목욕
14:40 ~ 15:40	간식 및 휴식
15:40 ~ 17:00	맞춤 프로그램 진행 (월, 화, 수, 목) 및 기저귀케어
17:00 ~ 18:00	저녁식사 및 약 복용, 양치
18:00 ~ 20:00	기저귀케어 및 취침준비
20:00 ~ 22:00	기저귀케어
22:00 ~ 24:00	기저귀케어
00:00 ~ 06:00	기저귀케어

## ▶ 프로그램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기능회복훈련 노인건강맨손 체조 (10분)
인지프로그램 미술치료 (60분)	여가프로그램 생활체조 (60분)	종교활동(60 분) /영화감상 (60분)	족욕 및 하지압박마사 지 (각 30분)	사회적응훈련 세상뉴스시청 및 전하기(60분)	인지프로그램 책읽기 (30분)
여가프로그램 풍선치기 (60분)	맞춤여가프로 그램 노래교실 (60분)	인지프로그램 전래회상 (60분)	인지프로그램 실버레크레이 션(60분)	여가프로그램 글,그림,숫자쓰 기 (60분)	여가프로그램 음악감상 (30분)
<p>▶ 매월 가족지지 (생신잔치) 진행</p> <p>▶ 년중 프로그램 , 계절 프로그램 진행</p>					

## ▶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응급환자 발생 → 응급조치 (주간 : 시설장, 간호조무사 , 야간 : 시설장, 야간근무자) → 연락

구분	굿모닝천안요양원 시설장	119구급대 (소방서)
전화번호	010-2585-4400	119

## ▶ 코로나19 대응 현황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보호자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사전예약제)			면회 금지	
	영상통화 적극 활용				
자원봉사 자 계약의사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계약의사는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방문허용				

▶ 후원 안내



● 후원의 종류

지정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 계좌안내 : 농협 301-0138-4239-81 굿모닝천안요양원

▶ 자원봉사신청 안내 ( 신청은 기관전화 : 041 - 522 - 0000 )



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이미용봉사	두발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 ▶ 노인학대예방 정보

**노인학대예방**

가족, 친척, 이웃,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신고는 24시간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9) 또는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센터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노력

1. 전 종사자 인권교육 (년 6시간) 사이버교육이수
2.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분기 1회)실시  
(전 종사자 + 전 수급자)
3. 노인인권보호지침 연 2회 제공(전 보호자)
4.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회 참석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변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어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인인권,  
관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인권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힘없는 노인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인권 문제가 더 이상  
가장, 사생활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외·학대받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노인인권엔 사랑과 관심을 더해주세요.

난 관창아

노인학대의 약 80%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대당하는 노인들은 자책감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또는 **110**  
당신의 신고로 어르신께 미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9)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9)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인학대 신고센터 (1577-1389)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2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